<붙임 1>

# 2027년 제1회 신제품(NEP)지정 신규신청 (200대 전략품목 포함)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공고

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6-339호

## 2027년 제1회 신제품(NEP)지정 신규신청 (200대 전략품목 포함)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공고

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 제16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5, 제19조 내지 제20조, 시행규칙 제2조의5 내지 제2조의7에 따라 2027년 제1회 신제품(NEP)지정 신규신청 (200대 전략품목 포함)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를 공고합니다.

2026년 11월 10일
국가기술표준원장

『신제품(NEP)지정』은 국내 최초 개발 신기술을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을 지정하여 기술개발 촉진 및 지정제품의 판로확대 기반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.

### 1. 신청자격

○ 신제품을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(기업, 출연(연), 대학 등)

### 2. 신청대상

○ 국내 최초 개발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·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핵심 기술로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

○ 신청제품 중 신제품(NEP) 200대 전략품목([별첨 2] 참고)에 해당된다고 신청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신청 시 200대 전략품목 분과를 선택하여 접수

**※ 신제품(NEP)지정 제외 대상**
- 이미 국내에서 일반화된 기술을 적용한 제품
- 제품을 구성하는 핵심 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제품
- 적용한 신기술이 신제품의 고유 기능과 목적을 구현하는 데에 필요하지 아니한 제품
- 엔지니어링 기술이 주된 기술이 되는 시설
- 식품, 의약품 및「의료기기법」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 중「의료기기법 시행규칙」제2조 별표 1에 따른 3등급 및 4등급 의료기기
-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모방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제품
-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아니한 이론을 적용한 제품
- 그 밖에 선량한 풍속에 반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제품

## 3. 신청접수 및 심사

○ 신청기간 : 2026. 11. 18(수)~12. 18(금) 16:00까지

○ 신청절차 : 온라인(https://www.nepmark.or.kr) 신청

※ 신청서 등 접수서류는 관련 규정에 따라 반환하지 않음

※ 신청접수기간 마감(16시) 이후 신청서류 제출 불가

- 제출이 완료되지 않은 서류(임시저장 등)는 자동 반려 처리됨

○ 200대 전략품목 심사

- 서류심사 시 전략품목에 해당할 경우 가점 3점 부여

※ 다수 품목에 해당되어도 가점 중복은 없음

- 전략품목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현장심사 시 적용

## 4. 신청서식 및 제출서류

○ 신청서식은 홈페이지(https://www.nepmark.or.kr) 정보센터 서식자료실 참고

- 신청서식 및 각종 제출서류는 온라인 제출(파일 업로드)

| 구분 | 제출서류 |
|---|---|
| 신청서식 | ① **신청서**(신규와 연장을 구분하여 작성·제출)<br>- **(신규) 신제품 지정 신청서**(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)<br>- **(연장) 신제품 지정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**(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)<br>② **신청제품 설명서**(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) |
| 제출서류 | ③ 신기술성을 증명하는 자료 1부(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)<br>가.「산업기술혁신촉진법」 또는 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」 또는 「건설기술관리법」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및 관련 평가자료<br>나. 신청제품과 관련된 산업재산권을 증명하는 서류<br>다. 연구개발 최종결과보고서<br>라. 신청제품 개발내용이 게재된 논문 또는 학술지<br>마.「발명진흥법」 제39조에 따라 특허청으로부터의 우수발명품 선정 증명하는 자료<br>바. 산업통상부가 시행하는 기술개발지원사업으로 개발된 제품임을 증명하는 자료<br>사.「특허법」 제86조에 따라 발급받은 특허증 또는 제100조에 따라 특허권자로부터 전용실시권을 이전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<br>④「산업표준화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품질경영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국제표준화기구(ISO)의 인증서 등 설명자료<br>※ ISO9001 인증서, IATF16949 인증서, ISO13485 인증서, 품질경영체제 구축 관련 자료 등<br>⑤ 다른 법률에서 해당제품에 대하여 사용 전 검사·검증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자료(해당 시 반드시 제출)<br>※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강제적으로 검사·검증 등의 인증을 받았다는 인증서 등<br>※ 의료기기의 경우 「의료기기법」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따른 1등급, 2등급 의료기기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반드시 제출 |

| 구분 | 제출서류 |
|---|---|
| 제출 서류 | ⑥ 한국인정기구(KOLAS)에서 인정한 공인시험·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<br>※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,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품심사 시 별도의 시험·분석·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<br>※ 신청모델명이 기재된 시험성적서로 신청일 기준 24개월 이내 발급<br>⑦ 신청제품의 실용화 증명자료<br>※ 신청모델명까지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, 납품확인서, 수출신고필증 등<br>⑧ 사업자등록증 사본<br>⑨ 중소기업 입증서류(해당 시 반드시 제출)<br>※ 중소기업확인서, 세무회계사 날인을 받은 중소기업등기준검토표 등<br>⑩ 지정심사자료의 사전공개 동의서(운영요령 별지 제1호 서식) |

○ 참고사항

- 신청은 반드시 제품명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심사를 통해 제품명이 변경될 수 있음
- 신청서에는 신청제품에 해당하는 모델명을 모두 명시해야 하며, 모델명은 실용화 증명자료 등에서 모두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함
  ※ 다만 시험성적서의 경우, 신청기업이 특정 모델의 시험성적서를 통해 다른 신청 모델들의 성능을 포괄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고, 위원회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정 모델의 시험성적서로 다른 모델들의 시험성적서를 갈음할 수 있음
- 특허 등 산업재산권 제출 시 특허증, 등록원부, 청구항, 요약부분 등 반드시 제출
- 공동개발 기술(제품)/특허 등을 단독 신청하는 경우 공동개발한 기관에 신청 기술(제품)에 대한 사용 및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첨부
  ※ 신청기관 소유의 특허가 아닌 경우 양수 또는 전용실시권 설정
- 접수된 서류는 심사 이외에 신청자의 동의 없이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음
- 서류작성이 미비하거나 수정해야 할 내용이 있는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
  ※ 다만, 신청인이 그 기간 내에 요청된 내용을 보완하지 않거나 신청인 스스로 신청서류의 반려를 요청한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음. (신제품(NEP)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3조 제4항)
- 연장신청은 1회에 한하며 신청은 최초지정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신청해야 함
  ※ 연장의 대상과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연장 가능(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및 제3항 참조)
- 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(법률 제21154호, 개정 '25.12.2., 시행 '26.6.3.)」에 '신기술·신제품 인증'의 명칭이 '신기술·신제품 지정'으로 단순 변경됨에 따라, 동 법 시행일 이후 인증서 발급 시 '신제품 지정서'로 발급됨을 안내드림 (명칭이 변경되어도 심사 절차 및 취득 후 지원 혜택은 전과 동일)

## 5. 심사 수수료 납부

○ 심사 수수료

- 지정받고자 하는 제품을 신제품 지정심사에 처음으로 신청하는 경우 심사 수수료 없음
- 다만,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거나 기존에 신청하여 지정 거부통지('21.1.18 이후)를 받은 동일한 제품을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심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함

| 구분 | 수수료(제품 건당) | 납부방법 |
|---|---|---|
| 서류·면접심사 | 20만원 | 신청접수 시 온라인 카드 결제 |
| 현장심사 | 50만원 | 현장심사 시 온라인 카드 결제, 개별통보 |

## 6. 문의처

○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심사팀

- 주소 : (06744)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37길 37 산기협회관 L층
- 전화 : 02)3460-9185~88 / 팩스 : 02)3460-9029